

정기(기동점검) 점검 결과보고

[동북선 도시철도 민간투자사업(2공구)]

□ 점검일시 : 2022.01.20 (목)

□ 점검결과

◆ 점검자 : 최영준, 박상중, 전소영, 최진석

○ 가설통로 안전(도시철도사업부)

- 105정거장 교반기 작업발판으로 올라가는 통로(계단)를 확보 바람
 - 106정거장 주형보 설치 작업장 하부로 내려가는 계단까지 진입하는 안전한 통로를 확보, 근로자는 지정된 통로로 이동하도록 안전교육 바람.
 - 106정거장 하수박스 양측으로 이동할 수 있는 사다리 또는 계단 등 안전한 통로를 확보 바람.
- ※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22조(통로의 설치), 제23조(가설통로의 구조)



○ 가설통로 안전(도시철도사업부)

- 108 환기구 BP장 설치작업 구간에 비치되어 있는 일자형사다리는 통로용으로만 사용하기 바람, 상부고정, 미끄럼방지 등 추락재해예방을 위한 관련규정을 준수하여 사용하기 바람 불필요할 경우 이동조치하기 바람.

- 107정거장 작업통로 주변에 비치되어 있는 강관자재는 전도 재해예방을 위해 견고하게 구름방지시설을 재설치하여 관리하기 바람.

- 또한, 108환기구 작업장 진입구간에는 조도 및 평탄성 미확보로 작업자 이동간에 전도재해 발생우려가 있으니 보완하여 관리하기 바람.

※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 3조(전도의 방지), 제22조(통로의 설치), 제23조(가설통로의 구조)



○ 건설기계 안전(도시철도사업부)

- 108환기구 부석정리를 위한 굴착기 후면으로 작업자 이동통로가 있어 수시로 이동이 이루어지고 있으니, 신호수를 배치하여 작업구간에 통제를 실시하기 바람, 굴착기 후면에 후방카메라 설치하여 관리하기 바람.

- 또한, 건설기계 조종원이 시동을 끄지 않은 상태로 운전석을 이탈하는 상황이 목격되었으니



재발되지 않도록 전 작업장 건설기계 조종원, 신호수를 대상으로 사고사례 중심의 특별 안전교육을 실시하기 바람.
※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99조(운전 위치 이탈 시의 조치), 제200조(접촉 방지)



○ 보호구에 관한 사항(도시철도사업부)

- 106정거장 주형보 용접, 용단 작업자는 상향 용접 시 불꽃이 근로자 얼굴로 떨어져 화상 등 안전사고 우려가 있으니 보호구를 착용하고 작업하도록 안전교육 바람.
※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(보호구의 지급 등)

